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Agribusiness) 종류형 주식 투자신탁-자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도이치자산운용’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Agri business) 종류형 주식투자신탁-자1호

투자신탁명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Agri business)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자 1 호
자산운용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명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즈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
판매회사명 및 상 담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든브릿지증권 (T. 3779-3000, www.bridgefnc.com)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교보증권 (T. 02-3771-9000, www.iprovest.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굿모닝신한증권 (T. 1588-0365, www.goodi.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광주은행 (T. 1588-3388, www.kjbank.com)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대신증권 (T. 02-769-2000, www.dai shi n. co. 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우증권 (T. 1588-3322, www.bestez.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대한생명 (T. 1588-6363, www.korealife.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빌딩 •삼성증권 (T. 1588-2323, www.samsungfn.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아이엔지증권 (T. 2186-8000, www.ing.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외환은행 (T. 1588-3500, www.keb.co.kr)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81 •우리투자증권 (T. 768-8000, www.wooriwm.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유진증권 (T. 1588-6300, www.eugenefn.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하나은행 (T. 2002-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대투증권 (T. 1588-3111, www.hanadaetoo.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이투자증권 (T. 318-9111, www.hi -i b. 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하이투자증권빌딩 •한국투자증권 (T. 1544-5000, www.truefriend.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씨티은행 (T. 3455-2114, www.citibank.co.kr) 서울시 중구 다동 39 •현대증권 (T. 02-768-0114, www.youfirst.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차IB증권 (T. 3787-2384 www.hmcib.com)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NH투자증권 (T. 02-2004-4114, www.nhis.co.kr)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1 •SC 제일은행 (T. 1588-1599, www.scfirstbank.com) 서울시 공평동 100 SC제일은행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9년 2월 11일
투자설명서 비치,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deam-korea.com)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펀드 용어 정리: 본문에 기재된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1 쪽)

1. 명칭: 도이치 DM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Agri business)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 자1호
(자산운용협회코드- 종류형A: 67292, 종류형C1: 67293, 종류형 C-I: 71633, 종류형 C-e: 80021, 종류형 C-W : 80022)
2. 펀드존속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3. 분류: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4.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자산운용
(해외위탁운용사: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즈)

II 투자정보 (본문 2-5 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형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시 자본수익을 추구												
2. 주요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주로 농수축산업관련주 (Agri business)란 농수축산업관련산업으로 주로 농산품 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로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부동산업체, 품질이 우수한 식품 제조업체, 식품과 바이오 연료 등)에 투자. 주요통화(USD, EUR, JPY, GBP)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50% 수준에서 헤징												
3. 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 및 관련 주식의 가치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환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따라서 모투자신탁을 통해 농수축산업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 및 분산투자의 효과를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deam-korea.com)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모투자신탁 해외위탁운용사 담당운용역>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성명</th> <th rowspan="2">직위</th> <th colspan="2">운용현황</th> <th rowspan="2">주요 운용경력</th> </tr> <tr> <th>운용중인 펀드수</th> <th>운용중인 자산규모</th> </tr> </thead> <tbody> <tr> <td>Oliver S. Kratz</td> <td>Managing Director</td> <td>6</td> <td>EUR 4360 mn</td> <td>메릴린치, 맥킨지 근무</td> </tr> </tbody> </table>	성명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Oliver S. Kratz	Managing Director	6	EUR 4360 mn	메릴린치, 맥킨지 근무
	성명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펀드수		운용중인 자산규모											
Oliver S. Kratz	Managing Director	6	EUR 4360 mn	메릴린치, 맥킨지 근무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즈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의 Oliver S. Kratz가 운용합니다.													
7.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기간</th> <th>최근 1년</th> <th>설정일 이후</th> </tr> </thead> <tbody> <tr> <td></td> <td>08.02.01 ~09.01.31</td> <td>07.04.05 ~09.01.31</td> </tr> <tr> <td>수익률</td> <td>-33.61 %</td> <td>-18.55 %</td> </tr> </tbody> </table>	기간	최근 1년	설정일 이후		08.02.01 ~09.01.31	07.04.05 ~09.01.31	수익률	-33.61 %	-18.55 %	이 실적은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간		최근 1년	설정일 이후									
		08.02.01 ~09.01.31	07.04.05 ~09.01.31										
수익률	-33.61 %	-18.55 %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농수축산업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자본수익을 추구

- 당해(자)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국가 개별의 법률에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국내 및 해외주식 (농수축산업관련주)등에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주식형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 투자신탁은 전세계의 농수축산업관련 (Agribusiness)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주식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등의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농수축산업 관련 국가 주식에 주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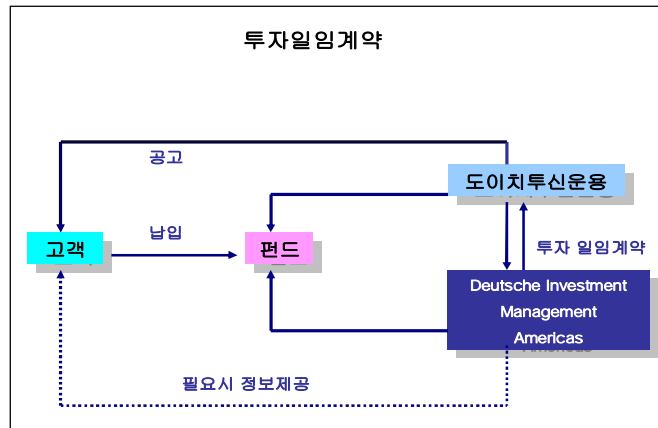
1) 당해(자)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90%이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농수축산업관련주 (Agri business* : 농업관련산업으로 주로 농산품 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로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부동산업체, 품질이 우수한 식품 제조업체, 식품과 바이오 연료 등 - 농업기계 산업으로부터 식품가공업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농업 그 자체도 포함합니다.)에 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인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가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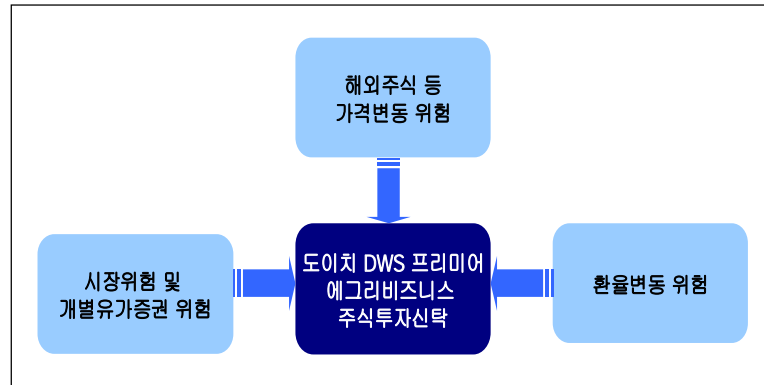
3) 모투자신탁(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Agri business)주식투자신탁- 모)의 외화표시자산 운용 업무는 [2007.03.14]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도이치인베스트먼트 아메리카스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가 담당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재량으로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투자전략 및 투자 위험' 중 '1.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개별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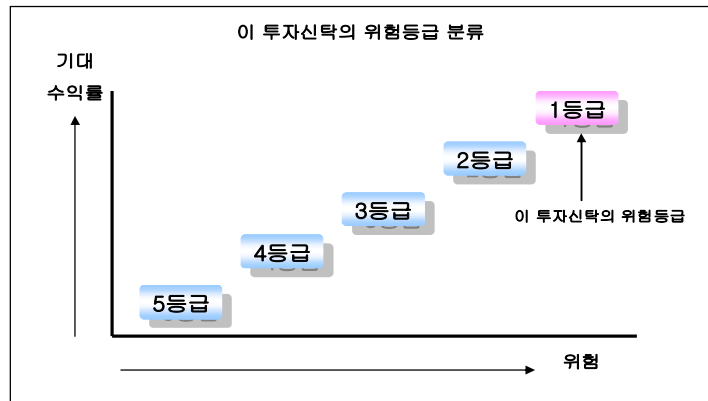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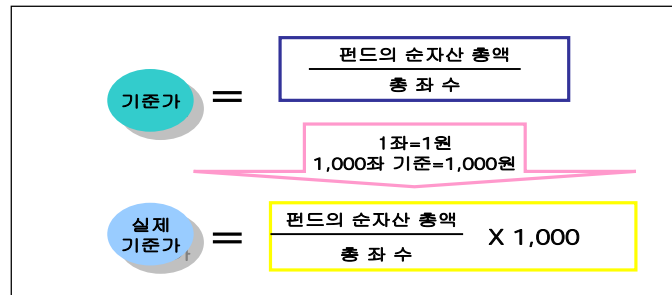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로 해외에 상장·등록 또는 거래되는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5등급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투자를 함에 있어 국제분산투자의 효과를 추구하는 투자자로서 해외투자의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 (예시)
1 등급	도이치 DWS 프리미어 브러시아 (Brussia) 종류형 주식투자신탁 자1호
2 등급	도이치 2stock 42 파생상품 투자신탁 P-1
3 등급	도이치 자백스 30 혼합 투자신탁
4 등급	도이치 코리아 채권 투자신탁 1-1
5 등급	해당사항 없음

5.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이 투자신탁은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eam-korea.com)·판매회사,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주식 투자신탁 - 모

성명	소속부서	직위	운용중인 자산규모	주요 경력
Oliver S. Kratz	주식 운용팀	Managing Director	EUR 4360mn	메릴린치, 맥킨지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 자문위원

※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의 운용은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즈(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의 펀드매니저 Oliver S. Kratz가 운용합니다.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종류형 주식 투자신탁 -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이정원	해외자산운용팀	차장	도이치자산 주식팀 애널리스트 재간접 펀드 매니저

※ 상기인은 당해 자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
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연평균 수익률

(단위:%)

구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립일 이후
투자신탁	-33.61				-18.55
비교지수					

(2)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구분	최근1년차	최근2년차	최근3년차	최근4년차	최근5년차
투자신탁	-33.61				
비교지수					

※ 상기수익률 자료는 2009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A	C1	C-I	C-e	C-W	
선취판매수수료	납입액의 1%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환매시 1회

주) Class는 가입조건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판매보수가 상이합니다. Class A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 종류(Class) A 수익증권 : 판매수수료 징구 방법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 2. 종류(Class) C1 수익증권 : 제한없음
- 3. 종류(Class) C-I 수익증권 : 법에서 정하는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의 변액 보험(특별 계정),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투자자, 국가 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원이상 매입한 개인 또는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4. 종류(Class) C-e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 5. 종류(Class) C-W 수익증권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지급시기
	CLASS A	CLASS C1	CLASS C-I	CLASS C-e	CLASS C-W	
운용회사보수	0.84	0.84	0.84	0.84	0.84	매3개월
판매회사보수	1.00	1.96	0.03	1.76	0.00	
수탁회사보수	0.06	0.06	0.06	0.06	0.06	
사무관리보수	0.025	0.025	0.025	0.025	0.025	
기타 비용	0.01	0.01	0.01	0.01	0.01	
총보수·비용 비율	1.935	2.895	0.965	2.695	0.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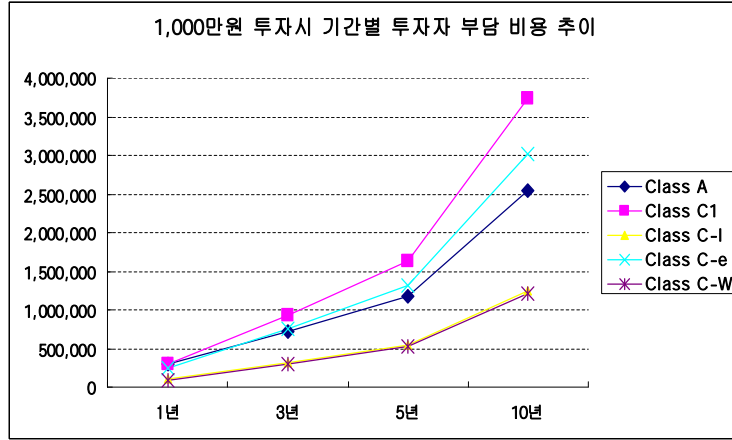
주)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1,000만원 투자시 예상비용> (단위: 원)

구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수익증권	300,837	727,758	1,198,440	2,597,168
Class C1 수익증권	296,737	935,465	1,639,662	3,732,332
Class C-I 수익증권	98,913	311,822	546,554	1,244,110
Class C-e 수익증권	239,338	754,551	1,322,491	3,010,361
Class C-W 수익증권	95,838	302,128	529,563	1,205,434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 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이 1보다 크면 1, 환급비율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A	C1	C-I	C-e	C-W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환매시 1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두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모두투자신탁에의 실질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Agri business)주식투자신탁- 모)의 외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 업무는 [2007.03.14]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스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가 담당합니다. **(해외운용사 변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주식 투자신탁 - 모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농업관련산업주에 주로 투자합니다.

-투자대상 종목군 : 농업관련산업주 (Agri business : 농업관련산업으로 주로 농산품 생산자, 농화학비료 및 종자 생산자, 농업테크놀로지 기업, 축산과 수산양식업, 부동산업체, 품질이 우수한 식품 제조업체, 식품과 바이오 연료 등)

국내 유가증권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은 주로 외화표시자산인 해외주식에 투자하지만, 투자대상종목에 국내 유가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유가증권 투자전략과 동일한 투자전략에 따라 운용됩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두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의 재량으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의 재량으로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투자위험

(1)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여,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 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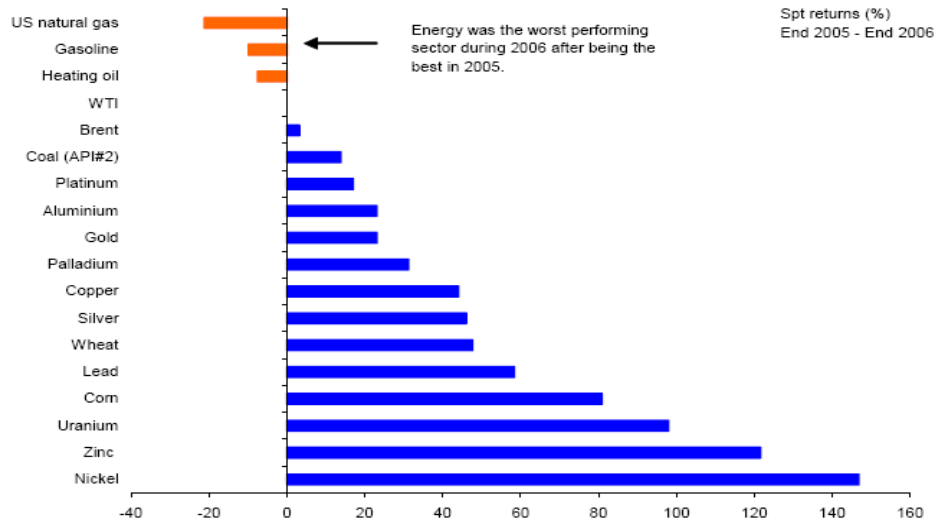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의 재량으로 환헤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동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 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의 재량으로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가 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유가증권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에그리비즈니스 관련 시장 현황

<옥수수, 밀 등 농업관련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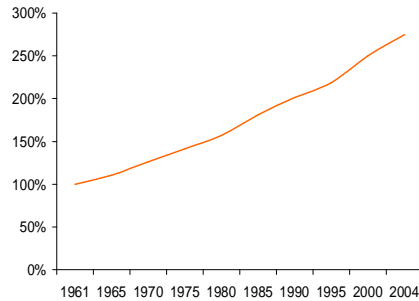


출처: DB Global Markets Research,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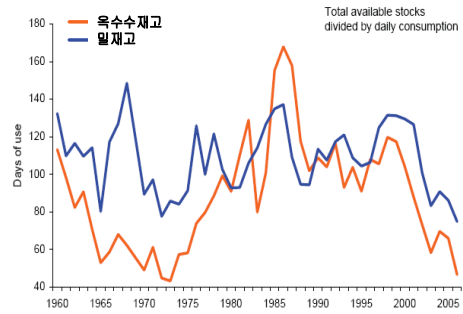
<농산물 공급 부족 현상>

- 1961년 이후 전세계 농산물 생산량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옥수수, 밀 등의 재고량은 급감하고 있음 (수요>공급: 초과수요)

[1961년 이후 전세계 농산물 생산량]



[옥수수 및 밀 재고 추이]



출처: FAO agricultural production, ABARE, USDA, 2006. Global Corn & Wheat Inventories declining (stock/use ratios), 1960 - 2006.



3. 투자대상

가. 당해 (자)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모 투자신탁	100%이하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Agri business) 종류형 주식 투자신탁-모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이하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 “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Agri business) 종류형 주식 투자신탁-모 ” 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국내 및 해외주식	60%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 유가증권 예탁증서 (DR : Depository Receipt) (이하 “ 국내주식” 이라 한다) 및 이와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및 유가증권 예탁증서 (DR : Depository Receipt) (이하 “ 해외주식” 이라 한다) 해외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수익증권	5%이하 (단, ETF는 30%까지, 외국간접투자증권은 20%까지 투자 가능)	단,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가능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인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인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까지 투자 가능



3) 해외주식 및 통화 및 실물자산 관련 장내외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이 신탁재산의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및 코스닥지수옵션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에 있는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거나 또는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이하 "주식관련 장내, 장외파생상품" 이라 한다.) 및 선물거래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이하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이라 한다) 및 상장되지 아니한 통화선물 및 통화스왑등(이하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이라 한다)
4)기타	<p>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 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p>기타 자산운용회사는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 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p>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라) 및 (마) 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약관 제 36 조 제 1 항 내지 제 2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당해(자)투자신탁

구분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나. 모투자신탁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Agri business) 종류형 주식 투자신탁-모”)에 적용되는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한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회사 발행주식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위험평가액’이라한다]]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가. 당해 (자) 투자신탁

대상자산	평가 방법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그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상장되거나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그 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기타 투자자산등에 대해서는 아래 모두투자신탁 평가방법과 같이 평가합니다.

나. 모두투자신탁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비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단,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등(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 및 1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외화표시 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p>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 2. 거래 유형(예: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회사들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우대하여서는 아니된다.</p>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거래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 영업일전일(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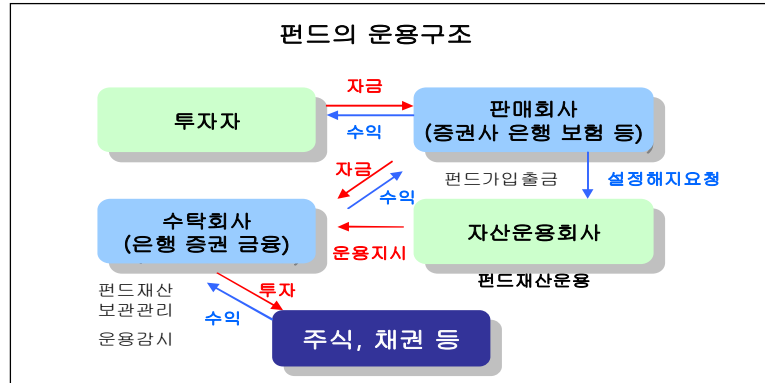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번지 영풍빌딩 19 층 02)724-7400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의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즈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 가 담당하고 있으며 위탁운용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의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업무를 위탁합니다.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업무/ 단순 매매주문업무

②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업무위탁의 책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도이치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아메리카즈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
주요 주주	Deutsche Bank Americas Holding Corp.
회사 연혁	1984.SSC, Inc. 로 설립 2002.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 로 회사명 변경
운용자산규모	한화 약 140 조원(06 년말 현재)에 달하는 글로벌, 미국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를 운용

※ 해외위탁운용사에 대한 위탁운용비용은 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합니다.

3. 최근 2 개
사업년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항목	요약 대차대조표		항목	요약손익계산서	
	2008. 3. 31	2007. 3. 31		2008. 3. 31	2007. 3. 31
현금및예치금	19,513	17,695	영업수익	20,107	12,883
유형자산	613	791	영업비용	16,263	16,271
기타자산	8,773	7,886	영업이익	3,844	-3,388
자산총계	28,899	26,372	영업외수익	46	127
예수부채	112	316	영업외비용	690	243
기타부채	5,505	4,967	경상이익	3,200	-3,504
부채총계	5,617	5,283	특별이익	0	0
자본금	19,411	19,411	특별손실	0	0
자본잉여금	1,678	4,011	세전순이익	3,200	-3,504
이익잉여금	2,193	-2,333	법인세비용	1,007	-804
자본총계	23,282	21,089	당기순이익	2,193	-2,700
부채및자본총계	28,899	26,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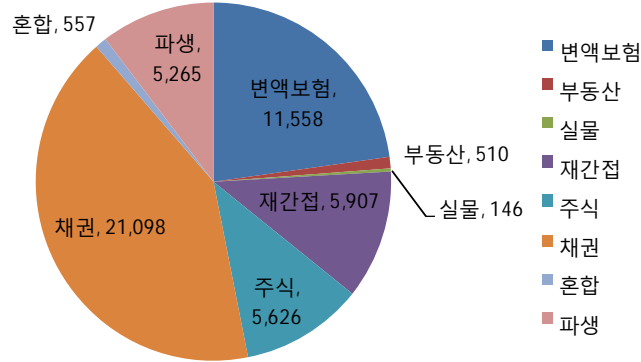


4. 운용자산규모

(단위:억좌)

채권	변액보험	재간접	주식	파생	혼합	부동산	실물	총계
21,098	11,558	5,907	5,626	5,265	557	510	146	50,667

※ 일임형 펀드 포함기준 (기준일: 2008년12월말)



5. 운용전문인력

(단위:억좌)

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규모	
이정원	36	차장	98	18,681	도이치자산 주식팀 애널리스트 FOF 펀드매니저

※ 이 투자신탁의 모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위탁)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당해 자 투자신탁의 책임 운용역입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 펀드매니저

도이치 DWS 프리미어 에그리비즈니스 주식 투자신탁 - 모

펀드매니저	Oliver S.Kratz
운용자산규모	EUR 4360 mn
과거운용경력	메릴린치, 맥킨지 근무,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 자문위원

주) 펀드매니저는 위탁회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골든브릿지증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전화: 1566-0900 홈페이지 : www.bridgefn.com	1954. 8 설립 2007. 10 상호변경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전화: 1588-3322 홈페이지 : www.iprovest.com	1949.11 설립 1994.04 상호변경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1588-0365 홈페이지 : www.goodi.com	1973. 설립 2002.0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전화 :1588-3388 홈페이지 : www.kjbank.com	1968.09.17 창립 2001.03.27 우리금융지주(주) 자회사로 편입
대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전화: 02-769-2000 홈페이지: www.daishin.co.kr	1962.07 설립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전화: 1588-3322 홈페이지: www.bestez.com	1970. 09 설립
대한생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대한생명 63 빌딩 전화: 1588-6363 홈페이지:www.korealife.com	1946. 09 생보사 출범 2002 한화그룹 편입
삼성증권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6번지 종로타워빌딩 전화: 1588-2323 홈페이지 : www.samsungfn.com	1982.10 설립
아이엔지증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 13층 전화:2186-8000 홈페이지: www.ing.com	2008.6. 설립
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전화: 1588-3500 홈페이지 : www.keb.co.kr	1967.01 설립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전화:1544-0000 홈페이지: www.wooriwm.com	1969 설립 2005.4 우리투자증권출범
유진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전화: 1588-6300 홈페이지 : www.eugenefn.co.kr	1654.05 설립
하나대투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전화: 1588-3111 홈페이지 : www.hanadaetoo.com	1968. 설립 2003.06 대한투자증권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T. 2002-1111 홈페이지 : www.hanabank.com	1991.07 은행으로 전환 2005.12 하나금융그룹 공식 출범



하이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전화: 318-9111 홈페이지 : www.hi-ib.com	1989.10	설립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전화: 1544-5000 홈페이지 : www.truefriend.com	1974.08 2003.06	설립 상호변경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 전화:3455-2114 홈페이지: www.citibank.co.kr	1967.9	설립
현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전화: 02-768-0114 홈페이지:www.youfirst.com	1962.06	설립
현대차 IB 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T. 3787-2384 홈페이지:www.hmcib.com	1955. 7	설립
NH 투자증권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1 전화: 02-2004-4114 홈페이지:www.nhis.co.kr	1981.11 2005.02	설립 상호변경
SC 제일은행	서울시 공평동 100 SC제일은행 전화: 1588-1599 홈페이지 : www.scfirstbank.com	1929.07 2005.04	설립 행명변경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장부 및 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하나은행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 1 가 101-1
전화번호	02-2002-1111
홈페이지	www.hanabank.com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 아이타스 (주)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연락처	02- 2168-0400
	회사연혁	설립일: 2000년 6월 15일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 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삼천리빌딩 2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34번지 대일빌딩 15층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 회사에 제공 등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6. 기타 수익자의 권 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 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에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 (www.deam-korea.com),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 (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용어정리
용어	내용
개방형 (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해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 (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 (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 (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말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_____

□판 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